

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접수시간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 소	(전화번호 :)		
신청내역	주택명			
	단지명			
	주택형			

위의 기재사항 및 자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(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)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금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부부 중복 신청 및 당첨에 관하여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2를,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상 규제에 관하여는 제55조의3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서류	자격입증 제출서류(별표 1 참조)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작성방법 등

-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
-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
- 사업주체 등은 신청서류 접수 후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- 접수시간은 ‘분’ 단위까지 기재하십시오.

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비여부

생애최초 주택구입여부	☞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으로 확인		
청약통장 순위·금액	☞ 청약통장 가입확인서		
소득세 납부실적	☞ 5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		
배우자 및 자녀수	배우자	혼인신고일	. . .
	미혼 자녀수	명	① . . .
		☞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☞ (필요시) 기본증명서, 임신진단서, 입양관계 증명서, 친양자입양관 계증명서	② . . .
			③ . . .
		※ (추가) 신생아 우선공 급인 경우는 대상자녀 의 가족관계증명서	④ . . .
월평균 소득	☞ 소득증빙서류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		
	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(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) 전원의 소득		
	가구 총계	원	
	세대주	원 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	
	세대원	원 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	
	세대원	원 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	
세대원	원 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		
해당지역 거주여부	☞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)		